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3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구단6336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1.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2.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11. 4.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9. 9. 10. 한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101,409,880원의 부과처분 중 82,566,24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토지분) 14,961,460원의 부과처분 중 11,192,7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이 2019. 9. 17. 한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136,561,230원의 부과처분 중 112,165,2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지방교육세(토지분) 20,177,950원의 부과처분 중 15,298,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3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소유의 [redacted]구 B 소재 토지 중 1,585.6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redacted]구 C 소재 토지 외 18필지 중 면적 합계 3,685.7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7항(이하 '이 사건 경감규정'이라 한다)에서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0. 12. 31.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9. 9. 10.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101,409,880원, 지방교육세(토지분) 14,961,460원을 부과·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피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9. 9. 17.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19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136,561,230원, 지방교육세(토지분) 20,177,9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 전체를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3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과세표준(또는 과세대상)에서 50%를 경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1.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경감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사건 경감토지'라 한다)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 3. 12.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경감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경감토지 역시 종합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3

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 중 어느 하나에 포섭되어야 한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도 보지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나)목], 이 사건 경감토지가 명시적으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책적인 고려에 따라 마련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1호 단서 (나)목의 규정으로 인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경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57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이 사건 경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재산세를 산정·부과한 위법이 있다.

2)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비록 구 지방세법이 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 (나)목 및 제2호 단서가 삭제되었고, 개정이유에서 '현행 규정상 이 법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과세대상 구분 체계상 종합합산과세대상 ·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하려는 것이 아니라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려는 것인바, 그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구분에 관한 조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세율적용에 관한 조항으로 옮겨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의 문언과 내용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3

때 위 법리와 같이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위 규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경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됨으로써 분리과세대상의 예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정당한 세액은 [별지 2, 3] 정당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토지분) 82,566,240원, 지방교육세(토지분) 11,192,740원,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재산세(토지분) 112,165,200원, 지방교육세(토지분) 15,298,750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 중 위 정당세액인 재산세(토지분) 82,566,240원, 지방교육세(토지분) 11,192,7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 이 사건 제2처분 중 위 정당세액인 재산세(토지분) 112,165,200원, 지방교육세(토지분) 15,298,75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3

별지 1.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경감한다.

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나.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법(2019. 12. 3. 법률 제16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3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3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5,000만 원 이하	1,000분의 2
5,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0만 원 + 5,000만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 원 초과	2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2억 원 이하	1,000분의 2
2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0만 원 + 2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 원 초과	28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다. 분리과세대상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3

별지 2.

정당세액 계산표(이 사건 제1토지)

1-1.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비교표(지역별)-토지분

(원)

세목	항목	구분	처분청 고지분				청구에 따른 정당한 세액				차이금액	비고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	합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	합계		
재산세	토지 일반분	토지 과세표준(*1)	-	19,001,830,400	-	19,001,830,400	-	9,580,009,600	9,421,820,800	19,001,830,400		
		세율	각 합산토지별로 세율 적용				각 합산토지별로 세율 적용					
		토지 산출세액	-	74,807,320	-	74,807,320	-	37,120,038	18,843,642	55,963,680	18,843,640	
	도시 지역분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0	19,001,830,400	-	19,001,830,400	0	9,580,009,600	9,421,820,800	19,001,830,400		
		세율	0.14%				0.14%					
		도시지역분 산출세액	0	26,602,560	-	26,602,560	0	13,412,010	13,190,549	26,602,560	0	
	합계					101,409,880				82,566,240	18,843,640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과표	-	74,807,320	-	74,807,320	-	37,120,038	18,843,642	55,963,680		
		세율	20%				20%					
		지방교육세 산출세액	-	14,961,460	-	14,961,460	-	7,424,000	3,768,740	11,192,740	3,768,720	
총합계						116,371,340				93,758,980	22,612,360	

(*1) 상세내역은 1-2 참고

1-2. 감면후 공시가격 비교표

순번	용도용	지번	도시 지역분	용도수	공시지가 ①	면적면적 ②	경관비율 ③	공정시장 가액비율 ④	처분청 고지내역						청구에 따른 정당한 세액					
									재산세 토지분				도시 지역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토지분				도시 지역분	지방교육세
									과세면적 토지(㎡)	분류	과세표준 ⑤ (①X②X (1-③) X④)	산출세액 ⑥ (⑤X세율)	산출세액 ⑦ (신종 도시 지역분 X 0.14%)	산출세액 ⑧ (⑥X 20%)	과세분 토지(㎡)	분류	과세표준⑨	산출세액 ⑩	산출세액 ⑪ (⑨X 0.14%)	산출세액 ⑫ (⑩X 20%)
서울(중구)																				
1		0			17,120,000	3,144.8	58%	70%	1,372.40	별도합산	18,843,641,600				785.20	별도합산	9,421,828,800			
															785.20	분리과세	9,421,820,800			
2		0			17,120,000	13.20	0%	70%	13.20	별도합산	158,188,800				13.20	별도합산	158,188,800			
									1,585.6㎡	별도합산	19,001,830,400	74,807,320			799.4㎡	별도합산	9,580,009,600	37,120,038		
									㎡	종합합산	-	-			㎡	종합합산	-	-		
									㎡	분리과세	-	-			786.2㎡	분리과세	9,421,820,800	18,843,642		
									1,585.6㎡	합계	19,001,830,400	74,807,320	26,602,560	14,961,460	1,585.6㎡	합계	19,001,830,400	55,963,680	26,602,560	11,192,74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2-23

별지 3.

정당세액 계산표(이 사건 제2토지)

1-1.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비교표(지역별)-토지분

(단위: 원)

세목	항목	구분	처분청 고지분				청구에 따른 정당한 세액				차이금액	비고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	합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분리과세	합계		
재산세	토지 일반분	토지 과세표준(*1)	-	25,522,446,943	-	25,522,446,943	-	13,324,421,886	12,198,025,057	25,522,446,943		
		세율	각 합산토지별로 세율 적용				각 합산토지별로 세율 적용					
		토지 산출세액	-	100,889,770	-	100,889,770	-	52,097,688	24,396,050	76,493,738	24,396,032	
	도시 지역분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0	25,479,623,470	-	25,479,623,470	0	13,317,998,365	12,161,625,105	25,479,623,470		
		세율	0.14%				0.14%					
		도시지역분 산출세액	0	35,671,460	-	35,671,460	0	18,645,200	17,026,260	35,671,460	-	
	합계					136,561,230				112,165,200	24,396,030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 과표	-	100,889,770	-	100,889,770	-	52,097,688	24,396,050	76,493,738		
		세율	20%				20%					
		지방교육세 산출세액	-	20,177,950	-	20,177,950	-	10,419,530	4,879,220	15,298,750	4,879,200	
종합계						156,739,180				127,463,950	29,275,230	

(*1) 상세내역은 1-2 참고

1-2. 감면후 공시가격 비교표

순번	행정동	지번	도시지역분	등·호수	공시지가 ①	면적단위 ②	경과비율 ③	공정시장가액비율 ④	처분청 고지내역					청구에 따른 정당한 세액						
									재산세 토지분				도시 지역분	지방교육세	재산세 토지분				도시 지역분	지방교육세
									과세분 토지(㎡)	종류	과세표준 ⑤ (① X ② X (1-③) X ④)	산출세액 ⑥ (⑤ X 세율)	산출세액 ⑦ (⑥ X 0.14%)	산출세액 ⑧ (⑥ X 20%)	과세분 토지(㎡)	종류	과세표준⑨	산출세액 ⑩	산출세액 ⑪ (⑨ X 0.14%)	산출세액 ⑫ (⑩ X 20%)
서울																				
1		0			2,964,000	611.00	50%	70%	262.85	별도합산	545,361,180				131.43	별도합산	272,680,590			
									도시 811 중 주택로 295.3 제외						131.43	분리과세	272,680,590			
2		0			2,239,000	177.41	85%	70%	26.61	별도합산	42,823,473				22.62	분리과세	36,399,952			
															3.99	별도합산	6,423,521			
3		0			10,600,000	20.20	50%	70%	10.10	별도합산	74,942,600				5.05	별도합산	37,471,000			
															5.05	분리과세	37,471,000			
4		0			10,600,000	21.90	50%	70%	10.95	별도합산	81,249,000				5.48	별도합산	40,624,500			
															5.48	분리과세	40,624,500			
5		0			10,600,000	19.60	50%	70%	9.90	별도합산	73,458,000				4.95	별도합산	36,729,000			
															4.95	분리과세	36,729,000			
6		0			10,600,000	21.56	50%	70%	10.78	별도합산	79,987,600				5.39	별도합산	39,993,800			
															5.39	분리과세	39,993,800			
7		0			10,600,000	13.28	50%	70%	6.64	별도합산	49,268,800				3.32	별도합산	24,634,400			
															3.32	분리과세	24,634,400			
8		0			10,600,000	11.92	50%	70%	5.96	별도합산	44,223,200				2.98	별도합산	22,111,600			
															2.98	분리과세	22,111,600			
9		0			10,600,000	29.00	50%	70%	14.50	별도합산	107,590,000				7.25	별도합산	53,795,000			
															7.25	분리과세	53,795,000			
10		0			10,600,000	25.20	50%	70%	12.60	별도합산	93,492,000				6.30	별도합산	46,746,000			
															6.30	분리과세	46,746,000			
11		0			10,600,000	29.40	50%	70%	14.70	별도합산	109,074,000				7.35	별도합산	54,537,000			
															7.35	분리과세	54,537,000			
12		0			8,796,000	64.20	50%	70%	32.10	별도합산	197,646,120				16.05	별도합산	98,823,060			
															16.05	분리과세	98,823,060			
13		0			10,510,000	6148.60	50%	70%	3,074.33	별도합산	22,617,945,818				1,537.17	별도합산	11,308,922,905			
															1,537.17	분리과세	11,308,922,905			
14		0			10,510,000	157.18	0%	70%	157.18	별도합산	1,156,373,260				157.18	별도합산	1,156,373,260			
		0			10,510,000	457.36	100%		0.00	-	-				0.00	-	-			
15		0			9,750,000	14.30	50%	70%	7.15	별도합산	48,798,750				3.58	별도합산	24,399,375			
															3.58	분리과세	24,399,375			
16		0			9,750,000	14.50	50%	70%	7.25	별도합산	49,481,250				3.63	별도합산	24,746,625			
															3.63	분리과세	24,746,625			
17		0			9,750,000	19.40	50%	70%	9.70	별도합산	66,202,500				4.85	별도합산	33,101,250			
															4.85	분리과세	33,101,250			
18		0			9,750,000	17.60	50%	70%	8.80	별도합산	60,060,000				4.40	별도합산	30,030,000			
															4.40	분리과세	30,030,000			
19		0			9,750,000	3.20	50%	70%	3.60	별도합산	24,570,000				1.80	별도합산	12,285,000			
															1.80	분리과세	12,285,000			
									3,685.7 ㎡	별도합산	25,522,446,943	100,889,770	35,671,460	20,177,950	1,912.13 ㎡	별도합산	13,324,421,886	52,097,688		
									㎡	종합합산	-	-			㎡	종합합산	-	-		
									㎡	분리과세	-				1,773.57 ㎡	분리과세	12,198,025,057	24,396,050		
									3,685.7 ㎡	합계	25,522,446,943	100,889,770	35,671,460	20,177,950	3,685.7 ㎡	합계	25,522,446,943	76,493,738	35,671,460	15,298,750